용산지구 RicheVille 리슈빌

광주 용산 리슈빌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문의 062 651-0333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람.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11. 24 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 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3.05.31)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85㎡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가산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추첨제로 입 주자를 선정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공급신청자 중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해당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기준으로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자(2016년 8월 24일 이전 계속 거주하여온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직장 근무처 이동에 따른 이주자(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85호」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청약시 순위 인정은 선납 및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 발생 여부를 결정했던 기준이 가입기간 · 지역별 청약예치금(전액) 충족시 즉시 순위 인정토록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5.06.08 개정)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같은 청약통장으로 두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지 않다면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사실만 인정됩니다. 단, 두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이중청약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제2호, 제3호 최하층 우선 배정 경쟁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6. 12. 13)부터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시 향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3년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1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1.15)제 54조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견본주택(http://apt.kroon.co.kr/apt/yongsan/)을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견본주택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42550호(2016.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지구 2블럭(용산동 380답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6층 10개동 총 8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820세대 중 특별공급 221세대 포함[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7세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그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해당동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6001461-01	76.5319	76A	76.5319	22.4135	98.9454	2.0077	36.8468	137.7998	49.0488	126	13	13	13	4	83	105동, 106동	0	2019년 05월 예정
	2016001461-02	76.4323	76B	76.4323	22.6536	99.0859	2.0051	36.7988	137.8898	48.9850	42	4	4	4	1	29	105동, 106동	0	
	2016001461-03	82.1389	82A	82.1389	23.8515	105.9904	2.1548	39.5463	147.6915	52.6423	6	1	1	1	0	3	105동, 106동	6	
	2016001461-04	82.0393	82B	82.0393	24.0917	106.1310	2.1521	39.4984	147.7815	52.5785	2	0	0	0	0	2	105동, 106동	2	
	2016001461-05	84.9717	84A	84.9717	24.7441	109.7158	2.2291	40.9102	152.8550	54.4578	190	19	19	19	6	127	101동, 102동, 103동, 104동	6	
	2016001461-06	84.9265	84B	84.9265	24.9607	109.8872	2.2279	40.8884	153.0035	54.4289	96	10	10	10	3	63	101동, 102동, 103동, 104동	3	
	2016001461-07	84.9512	84C	84.9512	24.6688	109.6200	2.2285	40.9003	152.7488	54.4447	96	10	10	10	3	63	101동, 102동, 103동, 104동	3	
	2016001461-08	91.9232	91A	91.9232	26.4614	118.3846	2.4114	44.2570	165.0531	58.9130	2	0	0	0	0	2	101동, 102동, 103동, 104동	2	
	2016001461-09	91.8780	91B	91.8780	26.6780	118.5560	2.4102	44.2353	165.2015	58.8840	1	0	0	0	0	1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	
	2016001461-10	91.9027	91C	91.9027	26.3861	118.2888	2.4109	44.2472	164.9468	58.8999	1	0	0	0	0	1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	
	2016001461-11	106.6583	106A	106.6583	25.3599	132.0182	2.7980	51.3513	186.1675	68.3566	212	0	21	0	6	185	107동, 108동, 109동, 110동	3	
	2016001461-12	106.9400	106B	106.9400	25.1975	132.1375	2.8054	51.4870	186.4298	68.5372	35	0	4	0	1	30	107동, 108동, 109동, 110동	0	
	2016001461-13	114.0703	114A	114.0703	26.8490	140.9193	2.9924	54.9199	198.8316	73.1069	9	0	1	0	0	8	107동, 108동, 109동, 110동	9	
	2016001461-14	114.3520	114B	114.3520	26.6866	141.0386	2.9998	55.0555	199.0939	73.2875	2	0	0	0	0	2	107동, 108동, 109동, 110동	2	

※상기 주택형 76A, 76B, 84A, 84B, 84C, 106A, 106B, 114A, 114B 타입의 /101동201호, 202호, 203호, 204호/105동201호, 202호, 203호, 204호/106동201호, 202호, 203호, 204호/107동101호, 103호, 104호,201호, 203호, 204호/108동101호, 102호, 201호, 202호/109동101호, 102호, 201호, 202호/110동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총 34호는 테라스 구조이며,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타입)	동별(라인별)	공급세대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10%) 2017.04.10	2회(10%) 2017.09.10	3회(10%) 2018.02.10	4회(10%) 2018.06.10	5회(10%) 2018.11.10	6회(10%) 2019.02.10	잔금 30% 입주지정
76.5319 (76A)	105동(1,2,4호라인) 106동(1,2,4호라인)	126	3층	6	94,335	199,665		294,0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88,200
			4층	6	94,335	205,865		300,200	30,020	30,020	30,020	30,020	30,020	30,020	30,020	90,060
			기준층	108	94,335	213,565		307,900	30,790	30,790	30,790	30,790	30,790	30,790	30,790	92,370
			2층(T)	6	94,335	205,865		300,200	30,020	30,020	30,020	30,020	30,020	30,020	30,020	90,060
76.4323 (76B)	105동(3호라인) 106동(3호라인)	42	3층	2	94,213	200,187		294,400	29,440	29,440	29,440	29,440	29,440	29,440	29,440	88,320
			4층	2	94,213	206,387		300,600	30,060	30,060	30,060	30,060	30,060	30,060	30,060	90,180
			기준층	36	94,213	214,087		308,300	30,830	30,830	30,830	30,830	30,830	30,830	30,830	92,490
			2층(T)	2	94,213	206,387		300,600	30,060	30,060	30,060	30,060	30,060	30,060	30,060	90,180
82.1389 (82A)	105동(1,2,4호라인) 106동(1,2,4호라인)	6	1층	6	101,247	195,553		296,800	29,680	29,680	29,680	29,680	29,680	29,680	29,680	89,040
82.0393 (82B)	105동(3호라인) 106동(3호라인)	2	1층	2	101,124	196,076		297,20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29,720	89,160
84.9717 (84A)	101동(1,4호라인) 102동(1,4호라인) 103동(1,4호라인) 104동(1,4호라인)	190	1층	6	104,738	202,562		307,30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30,730	92,190
			2층	6	104,738	214,462		319,200	31,920	31,920	31,920	31,920	31,920	31,920	31,920	95,760
			3층	8	104,738	221,262		326,0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97,800
			4층	8	104,738	228,162		332,90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99,870
			기준층	160	104,738	236,662		341,400	34,140	34,140	34,140	34,140	34,140	34,140	34,140	102,420
			2층(T)	2	104,738	228,162		332,90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33,290	99,870
84.9265 (84B)	101동(3호라인) 102동(3호라인) 103동(3호라인) 104동(3호라인)	96	1층	3	104,683	203,017		307,700	30,770	30,770	30,770	30,770	30,770	30,770	30,770	92,310
			2층	3	104,683	215,017		319,700	31,970	31,970	31,970	31,970	31,970	31,970	31,970	95,910
			3층	4	104,683	221,817		326,500	32,650	32,650	32,650	32,650	32,650	32,650	32,650	97,950
			4층	4	104,683	228,717		333,400	33,340	33,340	33,340	33,340	33,340	33,340	33,340	100,020
			기준층	81	104,683	237,217		341,900	34,190	34,190	34,190	34,190	34,190	34,190	34,190	102,570
			2층(T)	1	104,683	228,717		333,400	33,340	33,340	33,340	33,340	33,340	33,340	33,340	100,020
84.9512 (84C)	101동(2호라인) 102동(2호라인) 103동(2호라인) 104동(2호라인)	96	1층	3	104,713	202,287		307,0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30,700	92,100
			2층	3	104,713	214,187		318,900	31,890	31,890	31,890	31,890	31,890	31,890	31,890	95,670
			3층	4	104,713	220,987		325,700	32,570	32,570	32,570	32,570	32,570	32,570	32,570	97,710
			4층	4	104,713	227,887		332,60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99,780
			기준층	81	104,713	236,387		341,100	34,110	34,110	34,110	34,110	34,110	34,110	34,110	102,330
			2층(T)	1	104,713	227,887		332,60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33,260	99,780
91.9232 (91A)	101동(1,4호라인)	2	1층	2	113,307	206,903	20,690	340,900	34,090	34,090	34,090	34,090	34,090	34,090	34,090	102,270
91.8780 (91B)	101동(3호라인)	1	1층	1	113,251	207,408	20,741	341,400	34,140	34,140	34,140	34,140	34,140	34,140	34,140	102,420
91.9027 (91C)	101동(2호라인)	1	1층	1	113,282	206,744	20,674	340,700	34,070	34,070	34,070	34,070	34,070	34,070	34,070	102,210
106.6583 (106A)	107동(1~4호라인) 108동(1~2호라인) 109동(1,3,4호라인) 110동(1,3,4호라인)	212	1층	3	131,470	226,118	22,612	380,200	38,020	38,020	38,020	38,020	38,020	38,020	38,020	114,060
			2층	3	131,470	239,573	23,957	395,0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118,500
			3층	12	131,470	247,209	24,721	403,400	40,340	40,340	40,340	40,340	40,340	40,340	40,340	121,020
			4층	12	131,470	254,936	25,494	411,900	41,190	41,190	41,190	41,190	41,190	41,190	41,190	123,570
			기준층	175	131,470	264,482	26,448	422,400	42,240	42,240	42,240	42,240	42,240	42,240	42,240	126,720
			2층(T)	7	131,470	254,936	25,494	411,900	41,190	41,190	41,190	41,190	41,190	41,190	41,190	123,570
106.9400 (106B)	109동(2호라인) 110동(2호라인)	35	3층	2	131,817	247,257	24,726	403,800	40,380	40,380	40,380	40,380	40,380	40,380	40,380	121,140
			4층	2	131,817	254,985	25,498	412,300	41,230	41,230	41,230	41,230	41,230	41,230	41,230	123,690
			기준층	29	131,817	264,530	26,453	422,800	42,280	42,280	42,280	42,280	42,280	42,280	42,280	126,840
			2층(T)	2	131,817	254,985	25,498	412,300	41,230	41,230	41,230	41,230	41,230	41,230	41,230	123,690
114.0703 (114A)	107동(1,3,4호라인) 108동(1,2호라인) 109동(1호라인) 110동(1호라인)	9	1층(T)	9	140,606	255,449	25,545	421,600	42,160	42,160	42,160	42,160	42,160	42,160	42,160	126,480
114.3520 (114B)	109동(2호라인) 110동(2호라인)	2	1층(T)	2	140,954	255,496	25,550	422,0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126,6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급상품(청약시주택형)	76.5319	76.4323	82.1389	82.0393	84.9717	84.9265	84.9512	91.9232	91.878	91.9027	106.6583	106.94	114.0703	114.352
견본주택 등 약식 표기	76A	76B	82A	82B	84A	84B	84C	91A	91B	91C	106A	106B	114A	11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의 약식표현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분양금액을 납부할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사항 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합계면적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 등은 실제 입주 전 정산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 다만, 입주시 사용승인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범위 안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대납하는 이자후불제 조건임.
· 사업주체가 정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임.
· 본 표시사항의 구조물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자는 세대주 한정이며, 이전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되며, 1세대 1주택(1주택만)으로 신청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비속으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0조, 제41조 및 제46조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항 제8호, 제12호, 제14호, 제17호 및 제18호 및 제46조 제1항의 해당하는 분들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1순위가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역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2]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청약이 가능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자 선정결과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개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로 처리됨.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특별공급 당첨자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 및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이상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공제 후 환불되며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청약 불가.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① 사업주체가 제36조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 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36조제4호 및 제46조제5조,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와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③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76.5319A	76.4323B	82.1389A	84.9717A	84.9265B	84.9612C	106.6583A	106.9400B	114.0703A	비고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3	4	1	19	10	10	0	0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	4	1	19	10	10	21	4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4	1	19	10	10	0	0	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	0	6	3	3	6	1	0	
계	43	13	3	63	33	33	27	5	1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이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에 대해서도 동호변경불가)
- 신청 주택형의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 특별공급 중복선정은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1.15)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 법 상 미성년 자인(만 19세 미만) 직계자녀(입신 중에 있는 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인 자이며, 재혼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6.08.24 이전부터) 우선공급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입신 중에 있는 태아를 포함)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08.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경쟁이 발생한 경우 배점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를 선정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47호(2015.12.29)]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 고
계	65				
(1) 미성년 자녀수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인 경우만 포함.
(2) 영유아 자녀수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20	공급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5)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되,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에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 특별공급 중복선정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10% 이내)
· 신청자격
①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자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2016.08.24,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우선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 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자료(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자녀 수 및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자 사전방문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신청이 제한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총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관련 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5원 이하	6,570,484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주택의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바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1. 24)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구분합니다.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자(출산은 기본증명서 상의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합니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합니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같이 등재되어 있거나 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된 기본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설일용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경쟁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6.11.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와 별도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해야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1. 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6. 08. 24 이전 계속 거주자)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16. 11. 24 기준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11. 24)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함,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추첨.
-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중복청약 불가(1인 1건만 신청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 및 계약금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만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 개정(2016.11.15)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기입한 후 예치금액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등 청약가능 주택규모 변경시 변경 규모에 대한 청약신청자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예치 금액 변경하여야 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시 · 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이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없이 청약 가능)

구 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공통		- 85㎡ 이하 : 가점제(40%), 추첨제(60%)적용 - 85㎡ 초과 : 추첨제 적용(100%)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	
		85㎡ 초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추첨제	

■ 유의사항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청약 전자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점수 및 청약(가점)유의 · 무주택기간에 재당첨 제한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별표 등)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접수 완료 후 청약가점 항목별 점수 입력 · 수정 불가함에 따라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며 당첨자로 관리되니 유의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용 85㎡이하 : 청약가점제(40%), 추첨제(60%), 85㎡ 초과 : 청약추첨제(100%) 적용
- 주택공급 신청서의 기재사항 오기로 인한 부적격 처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청약 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 체결 불가함.
- 청약신청 시 당첨 여부 또는 입주자 선정 시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재당첨 제한이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은행에서 청약자의 청약자격 등(청약통장 가입자 확인, 순위 등)의 입력 오류로 인하여 청약자가 입력한 청약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청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가점제 적용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 「가점항목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함.

●가점제 항목 세부 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세대원까지 포함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록되어 있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인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 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 청구 비치) · 청약예금통장, 청약부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 구비서류 추가(부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공급주체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12.09) 이후부터 평일시간 09:00~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구 분	환불장소	비 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자동 환불 미신청자 청구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 (※ 은행창구 청약 신청시와 동일), 신청 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 신청시와 동일)
●2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은 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2016. 11. 29(화) 09:00 ~ 14: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광주 용산지구 계룡리슈빌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298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6. 11. 30(수) 08:00 ~ 17:30	인터넷 신청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6. 12. 01(목) 08:00 ~ 17:30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청약가점 확인 결과에 따라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주택형별 청약자격을 신청받으므로 청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자격 당첨여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 참조)(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초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설일용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수급자 증명서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일시 : 2016.11.29(화) 14: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현장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 : 2016.12.08(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일시 : 2016.12.13(화) ~ 2016.12.15(목) 10:00 ~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298번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6. 12.08(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당첨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청약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취소됨.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견본주택 내 현금수납 불가함)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 (全 은행 청약자)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분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 조회
이용기간		2016.12.08 ~ 2016.12.17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전자금융 공동망 1369 (서비스코드 : 5#)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당첨자	청약신청 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12.08(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선정 ① 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접수 ②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선정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가(세)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2순위 포함)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당첨자 발표시 예비당첨자의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당첨자의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여부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미계약시 사업주체는 금융결제원에서 통보받은 주소 및 연락처로 통보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청약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2016년 08월 24일이전 계속 거주하여온 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가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음.

V 계약체결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계약시구비서류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표등본(세대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대리계약자(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일반/다자녀/노부모	○	· 주민등록표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인정,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 기혼자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속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 공란으로 발급하여야 계약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자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공급을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 경우 또는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청약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주택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기재 사실을 입증하여 당첨자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공급받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이 취소되며, 당첨된 주택은 부적격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해당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고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자로 관리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확인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자격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셨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일반공급 청약자가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따름)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3항 및 제57조 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여부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단,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은행	317-0011-4034-41	계룡건설산업(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보증서 발급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또한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이에 대해 중도금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19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76.5319	76A	22.5330	13,790,000	2,000,000	11,790,000
76.4323	76B	25.8438	14,310,000	2,000,000	12,310,000
82.1389	82A	15.9030	11,500,000	2,000,000	9,500,000
82.0393	82B	19.2138	12,020,000	2,000,000	10,020,000
84.9717	84A	27.3119	14,790,000	2,000,000	12,790,000
84.9265	84B	28.3763	14,510,000	2,000,000	12,510,000
84.9512	84C	28.4003	14,820,000	2,000,000	12,820,000
91.9232	91A	19.2879	12,190,000	2,000,000	10,190,000
91.8780	91B	20.3523	12,180,000	2,000,000	10,180,000
91.9027	91C	20.3763	12,180,000	2,000,000	10,180,000
106.6583	106A	29.2517	15,680,000	2,000,000	13,680,000
106.9400	106B	32.7311	15,970,000	2,000,000	13,970,000
114.0703	114A	20.7177	13,500,000	2,000,000	11,500,000
114.3520	114B	24.1971	13,790,000	2,000,000	11,79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은행	317 - 0011 - 4035 - 81	계룡건설산업(주)	발코니확장대금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계좌로 분양대금, 시스템에어컨 옵션대금 및 유상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한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이후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첨자 사정 등으로 변경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방법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입주 후 필요한 경우 세대별 조치 사항으로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세대와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막세시리)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사시는 단열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무상선택옵션
1. 침실1 붙박이장

구분	대수	설치위치		비고
가구선택제	선택1	침실장형	침실1	발코니 확장시에 선택가능
	선택2	화장대형	침실1	

2. 주방 김치냉장고장

구분	대수	설치위치		비고
가구선택제	선택1	스탠딩형	주방	106(T) / 106B(T) / 114A(T) / 114B(T) 타입 제외
	선택2	뚜껑형	주방	

■ 테라스세대 유의사항
·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일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 및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동일평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테라스옥외출입여부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형태가 일부 다르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의 유무 또는 위치에 따라 창호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테라스가 있는 경우 내부 발코니 창호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테라스 외곽부 난간대는 견본주택과 상이한 제품으로 설치 될 수 있음.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에게 인지시킴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자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세대에 다른 세대 등이 위치하므로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화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하여야 함.
· 테라스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홈통 배관이 골조 등에 매립 시공되거나 노출되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및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환기팬,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 테라스 형태의 외부공간은 하부층 용벽 상부와 발코니 공간이 돌출됨에 따라 생긴 부분으로 발코니 형태와 같이 지붕, 벽 등을 설치하여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불법 시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테라스는 세대 디자인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공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임.
· 테라스는 세대의 외부 낙하물방지용 처마구조물, 외부마감재(석재타일 등), 난간대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자재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사업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융별 배정소세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거실,주방,식당,복도,안방,침실,드레스룸, (타일) 강화마감식현관 (타일)발코니,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정	벽지 및 천정지, 벽 및 천정 도장, 거실아트월(디자인월), 주방벽타일, 욕실,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빨래건조대, 통합무선AP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3)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4) 욕실	타일(바닥,벽), 천장(이강화마감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비데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문,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수구류, 바닥배수, 슬리브 및 전기배선
5) 주방	주방TV,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벽판넬, 주방수전, 싱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절수페달	설비배관, 전기 통신설비급배기 환기설비 기기 배관(배선주방TV콘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6)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기틀, 문틀시촉,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장)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안방)

■ 마이너스옵션 금액

구 분	76.5319	76.4323	82.1389	82.0393	84.9717	84.9265	84.9612
타 입	76A	76B	82A	82B	84A	84B	84C
금 액	22,424,000	22,455,000	24,020,000	24,052,000	24,864,000	24,903,000	24,843,000
구 분	91.9232	91.878	91.9027	106.6583	106.94	114.0703	114.352
타 입	91A	91B	91C	106A	106B	114A	114B
금 액	26,829,000	26,868,000	26,807,000	29,919,000	29,946,000	31,936,000	31,963,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지재수급 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문 공사 시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은 기존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바닥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V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을 위한 주택소유 사항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유할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으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제4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되,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한정한다) 또는 입주자 순차별로 자격조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한정한다) 해당 순위의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등을 갖추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결과기관 및 오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3. 청약자격에 대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가점항목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자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분양임대당첨자(일반 및 특별공급) 기준으로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접수자의 경우 입주자 선정된 후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측벽 상단에 브랜드명, 주거동 호수의 순서로 표기할 수 있으며, 발광조명에는 건설사의 명칭, 로고, 브랜드의 사용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용산리슈빌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동호수 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평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주택형(㎡)]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시 착오 없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실물 및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전 반드시 관련 설계도 등을 통하여 현재 분양조건 및 주변환경 계약체결 자에게 확인하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등의 높이 ·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물의 색채, 외관, 조경, 식재 및 부대조 등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차량, 및 입주의 위치, 그 외 산재 등은 표현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이는 전시품으로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전자제품,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실시하는 소음예측 측정기관 및 결과는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건축심의 시 소음예측 측정기관 및 측정결과
주변의 도로교통 소음이 아파트에 미칠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한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외:65dB(A)미만, 실내:45dB(A)이하)에서 요구되는 실내 · 외 기준을 모두 만족함.

- 실외소음도 예측 결과 및 평가 Leq[dB(A)]

구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평가	기준치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최고치)	주간	1~5층	62	56	54	52	53	62	62	46	48	61	만족	65 미만
		6층이상	64	62	57	55	59	64	63	59	58	63		
	야간	1~5층	59	53	50	50	50	59	58	43	44	58		
		6층이상	61	59	54	54	56	61	60	56	55	60		

- 실내소음도 예측 결과 및 평가 Leq[dB(A)]

구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평가	기준치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최고치)	주간	6층이상	28	26	21	19	23	28	27	22	20	26	만족	45 이하
	야간	6층이상	23	21	16	14	18	23	22	17	15	21		

- 저감대책 수립 후 예측 결과 및 평가 Leq[dB(A)]

구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평가	기준치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최고치)	낮시간대	58.0	56.7	54.2	52.3	55.3	58.0	57.4	54.7	53.9	57.3	만족	65 이하
	밤시간대	55.0	53.5	50.8	49.0	52.0	55.0	54.3	51.4	50.5	54.2		55 이하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생배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LH 및 용산지구 주택개발사업자(1-1BL, 1-2BL, 2BL, 3BL)와 협의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협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조건 불이행 시 당 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학교에 한하여 통학버스 제공 등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 · 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대시설 등은 실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사 또는 타지역의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저층부 입면의 변화 및 마감재석재마감 적용) 있는 세대에서는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되어 시공됨,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또한 입면의 형태, 위치, 마감자재, 색상 등 실제 시공 시 변동될 수 있음.
· 관계법령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단지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 등의 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수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대지면적	공동주택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	47,619.00㎡	94,032.3007㎡	641.5400㎡	17.42%	199.96%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단지외부여건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보행가로는 공공성의 보행가로로 생활권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민 외 외지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광주광역시청 특화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전시된 바닥패턴, 시인물, 식재등의 계획이 조정되어 질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남측변 근린공원으로 단지 내 보행동선이 계획되어져 있으며, 연결부분의 설계계획 내용은 인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주변의 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 내 계획시설 당 부지 외 대지이므로 입주민 요구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하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및 단지 간 계획도로 폭: 북측: 폭19.5~22.25M 4~5차선, 서측: 폭19.5M 4차선, 남측 소로: 폭27M 6차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지주변의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 최종측량성과에 따라 도로폭, 차선수, 보도폭,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재반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실시계획 등 인 · 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세대수, 건축, 면적 등), 주변 도시계획 시설(공원, 녹지, 학교, 도로 등) 및 단지 내 외 사업 및 기타 지역의 현재상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의 책임이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산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주진 중 일부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용산지구 내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 세부내역,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물 등에 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및 도면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하여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주변 근린공원 등이 조성 되어 있거나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해당관청의 계획 및 시행시기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인 대표세대 및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안내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추진 등은 개발되는 시점 등이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람.
· 용산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방공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과 이외의 구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숙지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용산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공동주택 계단실 및 공용홀은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공용공간이므로, 창호류 및 도어 등을 설치할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행위신고와 관리주체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의 아이소메트릭 이미지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가구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유형에 따라 계약자 별로 마감자재가 다를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설치되며 이로 인한 기능변경 등은 입주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처리 및 배출장치) 등 단지 내 공용으로 관리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의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의 경우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임.
·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간은 현재 미정사항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 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 · 보수 ·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동주택 측벽외벽) 로고의 설치여부, 위치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약 전 본인의 세대 주변의 시설물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정차장소(간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관청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 및 일부구간 지하1층으로 구성되며, 지하2층의 일부 다른 주동 등의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대수는 대지내에, 주동배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의 위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LED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 일부구간은 등기구가 생략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정,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 · 측면 · 배면 인근 및 필로티 내에 설치될 예정으로 본 공사 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위치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 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통제시설의 위치는 교통체계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장고 및 생활쓰레기 보관소 위치는 추후 조경계획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옥외공간,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른 조경 선행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급 · 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제연팬 등,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해 차량 도어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동에 한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지하 주차장과 공동주택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의 깊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르며 일부 동에 한하여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해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사용성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 등 일부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세대에 따라 상이함.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골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지상 · 지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태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인접대지 및 주변단지 레벨보다 낮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의 대지조성 및 주동의 필로티 바닥의 설치 계획바닥높이는 난간설치 유 · 무 등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도서, 가구류, 운동장비, 락커류, 기전 소모 집기 및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통합택배보관소는 106동 지하1층에 설치예정이며, 설치위치 불합리 등의 사유발생시 통합설치 또는 위치이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세대의 층간소음을 최소화를 위하여 THK 30(경량충격음 1급, 중량충격음 3급이상 인증제품) 층간소음재 시공예정이나 입주 후 입주자의 생활습관이나 시공오차 등으로 해당 등급기준에 미달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콘크리트 슬래브두께는 기본 210mm이나 현관, 욕실 등은 슬래브두께가 축소되어 시공됨.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의 비확장시, 하부세대의 천정부위에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등의 천장부분이 변경되거나 깊이 등이 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방환기는 개별자체이 적용되도록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발코니 천장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1개소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는 1~3층(필로티포함 석재마감)으로 시공되며(색채특화계획에 따라 일부세대는 주거부 입면 도장면적등 구간, 보행출입구 및 저층부 위치, 외벽도장, 색상 및 디자인은 색채특화디자인이 완료된 대로 시공되어지나 색채마감 중 불합리한 부분 등이 발생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해 돌출장식물, 옥상구조물 등이 설치되며 일조, 조망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각 동의 하부 또는 별동으로 분산배치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모형, 안내카다록, 설계도면등을 참조하시어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 동 일부 최상층 옥상에는 태양광 집열판 구조물이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조망권 제한, 눈부심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효율에 의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동의 주변 및 외부주요도로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며 각 동별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동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중앙 회전교차로에는 영 · 유아 및 학생들의 학원차량 이용을 위한 승 · 하차장(Drop Off-Zone)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조망권 침해, 소음, 차량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동은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건축물에 의해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청약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외부공간 및 세대에서는 시설의 냉 · 난방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며,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종류,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107동, 110동 남측 근린공원은 블록당 다수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조경 식재가 예정되어 있어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자연석 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하여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높이 차이, 레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 외의 노출옹벽, 조경석 및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대지경계선과 법면부의 책임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 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규모 및 형태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천연자재의 색상, 단판무늬,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5. 본 공사 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6.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 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지 않음.
7.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0. 본 공사 시 배관점검구 위해 점검구가 욕실 등에 설치될 수 있음.
11.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2.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강마루로 시공방식 및 조색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3.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 ·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에폭시페인트로 시공됨.
14.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5.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6.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17. 본 공사 시 천정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정구조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다용도실 상부에 천정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19.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20.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21.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2.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3. 각 세대 도어에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24.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크기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작업통로는 작업완료 후 조적마감으로 폐쇄함.
25.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6. 단위세대 내부(단지발코니, 욕실, 현관, 테라스 등)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선택형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옵션 선택의 경우) 등 각종 설비의 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27. 세대 내부 칸막이 벽체는 경량칸막이 벽 또는 조적벽(고정식으로 시공됨(화장실 및 PD는 조적벽체 시공))
28. 세대와 PD가 면하는 벽체의 형태 및 재질은 동 · 호수에 따라 상이함.
29.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와 욕실의 천장높이는 실시공시 바닥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으로 인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30.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발코니 타일의 자재 등은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전시품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31.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고정형 가구와의 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32.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손잡이)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폭 및 분할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33. 공장생산 자재에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시공상 오차) 발생할 수 있음)
34.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됨.
35. 창호 나누기, 크기 및 마감은 견본주택사양을 우선 적용하여 창호상세,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마다 서로 상이할 수 있음.
36. 세대 내/외 문짝 상부와 하부에는 무늬결면 마감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규격
1.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인쇄과정상 오타,오기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델하우스에서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리스트 등을 필히 열람하여야 함.
2. 세대는 도세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측을 통하여 시공되었으나 시공오차 및 허용오차 범위내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함.

■ 제공/전시품목
1. 분양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구류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도서,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자재는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 전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예정임.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3. 단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도로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전조명 효과 등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4. 전체 동의 저층 세대의 경우 보행 동선, 놀이터, 도로 등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전체 동의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7. 저층세대는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행정관청의 디자인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되며 입주민의 개인적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실시설계 검토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분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 및 투시도, 조감도, 부분투시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설계변경 등을 통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도로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변환경
1. 용산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용산지구의 학교 관련 주택은 공동주택 교육청에서 학교의 개발상황, 계획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부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교육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배정 초등학교는 용산초등학교, 중학교는 동구지역, 고등학교는 광산동으로 지정할 수 있음, 배정학교는 현재 예정사항으로 추후 학교명칭/배정학교가 변경될 수 있음.
6.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생배치 시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LH) 및 용산지구 주택개발사업자(1-1BL, 1-2BL, 2BL, 3BL)와 협의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협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조건 불이행 시 당 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제공 등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1.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공품목은 상담사 및 관련도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질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에 부수되는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맘스스테이션, 경비실, 택배보관소, 기타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외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따른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따른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랐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였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 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마목)	적 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설비 설치(바목)	적 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 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 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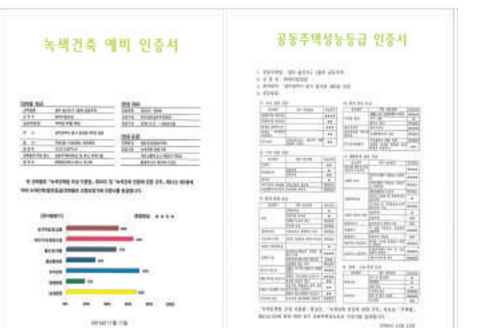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통신 감리	비고
회사명	(주)승우엔지니어링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미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원)	1,943,283,100	606,460,000	202,4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금 액	구분		금 액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80,507,473,200	공사비	토 목	7,668,837,947
	기간이자	2,366,912,102		건 축	96,975,650,262
	그밖의 비용	8,267,613,199		기계설비	17,792,277,800
간접비	설계비	1,602,080,000		그밖에 공종	18,674,534,782
	감리비	2,752,143,100		그밖의 공사비	13,636,000,000
	부대비	29,495,650,590	그밖의 비용	그밖의 비용	13,183,527,018
합 계		292,922,7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7812016-101-0002400호	205,045,89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등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채권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와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예정자에게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별도에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섀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시공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3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비용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 이 하여야 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 주체	시공회사
상 호	(주)케이알산업	계룡건설산업(주)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법인등록번호	171211-0002799	160111-0003121
사업자등록번호	126-81-05325	314-81-07954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apt.kroon.co.kr/apt/yongsan/

계룡건설